

의안번호	제 336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

발의자	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연월일	2019년 11월 28일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6
----------	-----

발의연월일 : 2019년 11월 28일  
발 의 자 : 이상욱, 박상돈, 최경천,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전원표, 허창원, 송미애,  
연철흙, 이옥규, 정상교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인 충북도민의 언어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나. 매년 충청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도민 대상 한국수어교육 지원(안 제5조)
- 라.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노력(안 제7조)
- 마. 도내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의 관련 사업지원(안 제8조)
- 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 - 91호
- 다. 협 의 : 문화예술산업과
- 라. 비용추계 : 첨부 제외 사유서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 한국수화언어사용자 등의 언어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 (이하 “한국수어” 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 등”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 나. 충청북도의회
  - 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인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한국수어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을 위한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한국수어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및 한국수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한국수어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교육에 있어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어통역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이나 그 가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및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한국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들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 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 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 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 첨부제외 사유

- 이 조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인 희망자 수어교육(제5조),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제7조), 도내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8조), 포상(제10조) 등은 권고형식의 규정이며, 지원 규모·대상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